

2022학년도

## 제5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22년 11월 30일(수) 13:30

2. 장 소 : 화도관 대회의실

3. 대학평의원회의원(12명)

■ 참석의원 : 정동훈, 이강훈, 유경선, 강성률, 천성오, 권인철, 양근제,  
박민태, 전시찬, 김민수, 반중혁 (11명)

■ 원격(ZOOM) 참석의원 : 정용식(1명)

■ 불참의원 : 없음 (0명)

4. 안 건

가. 심의 : 학사구조 개편(안) 및 규정 개정(안)

안 건		상정부서
1.	2024학년도 첨단학과 신설에 따른 대학 학사구조 개편(안)	평가감사팀
2.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교육지원팀
3.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대학원

나. 자문 : 규정 개정(안)

안 건		상정부서
4.	교원인사 규정 개정(안)	교수지원팀
5.	교수업적평가 규정 개정(안)	
6.	연구년 규정 개정(안)	
7.	특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8.	전자정보공과대학 공학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안)	전자정보공과대학
9.	대학원 협동과정의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안)	대학원
10.	직제 규정 개정(안)	평가감사팀
11.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정보과학교육원
12.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운영 규정 개정(안)	
13.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학생 준칙 개정(안)	

14.	정보과학교육원 교강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15.	공간관리 규정 개정(안)	기획예산팀
16.	공간위원회 규정 개정(안)	
17.	직원인사 규정 개정(안)	총무팀
18.	직원복무 규정 개정(안)	
19.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개정(안)	현장실습지원팀

## 5. 회의 내용 및 회의 결과

### 【제9대 대학평의원회 구성】

#### 1)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유경선 의원이 성원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하다.
  - 총원 12명 중 11명 회의장 참석, 1명 원격(ZOOM) 참석
- 유경선 의원이 제9대 대학평의원회 의원별 소개를 제안하고 이에 실시하다.
- 제9대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위촉과 관련하여 유경선 의원이 의원들에게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임기에 대해 설명하다.
- 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관하여 논의하고 대학평의원회 규정에 따라 '호선'을 통해 정동훈 의원을 제9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추대하고, 권인철 의원을 부의장으로 추대하다.
- 정동훈 의장(이하 '의장')이 당선소감을 발표하고 회의를 주관하다.

### 【심의 : 학사구조 개편(안) 및 규정 개정(안)】

#### 1) 2024학년도 첨단학과 신설에 따른 대학 학사구조 개편(안)

- 김재요 기획처장(이하 '기획처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첨단분야 대학 학생정원 조정 계획
  - 2024학년도 첨단학과 신설에 따른 대학 학사구조 개편
- 주요 내용
  - 결손인원을 활용한 첨단분야 학과 신설(안)
  - 첨단학과 신설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안)

학과(부)	입학정원
반도체시스템공학부 반도체시스템공학전공	입학정원 58명
로봇학부 AI로봇전공	입학정원 74명

- 의장이 기획처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정용식 의원이 전자정보공과대학에서 학사구조개편을 논의하여 왔고, 첨단학과 신설을 먼저 시작하자는 것은 합의된 내용은 맞지만, 학과 의견수렴 및 학과별 학생정원 조정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내용을 통보받았고, 학생정원조정심의위원회 심의된 사항으로 회의자료로 제시되어있음을 설명하다. 학생정원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면 학생정원조정이 완료되는 것이 학교의 절차인지, 학과의 충분한 논의에 따른 피드백이 필요한 것인지 학생정원 조정 절차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학생정원조정은 학과의견수렴 과정은 필수과정이며, 충분한 의견을 받아서 진행되어야 함을 설명하다. 전자정보공과대학에서 학사구조개편 논의가 진행 중에 중단이 되었고, 첨단학과 같은 경우 교육부에 신청하는 절차가 있어 그 시기를 고려해야 하므로 학교에서 먼저 안을 만들어 제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을 설명하다. 이에 8월경 총장님께서 첨단학과 개편(안)을 만들어 전자정보공과대학 학장 및 학과장 전체 간담회에서 이를 제시하였고, 학과 의견수렴을 요청하였음을 부연하여 설명하다.
- 기획처장이 9월~10월 기간을 거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은 내부적으로 학과장 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확정하였고, 전자정보공과대학도 학과장회의에서 재 논의하였음을 설명하다. 그러나 전자정보공과대학의 수정내용은 받지 못하였으므로 최초 제안한 내용대로 진행되었음을 추가 설명하다.
- 기획처장이 제1차 학사구조개편위원회(10/27)에서 이 내용을 보고하고 논의하였고, 최종 심의의결은 학교절차상 학생정원조정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사항임을 설명하다. 학생정원조정심의위원회 회의자료로 전자정보공과대학 및 소프트웨어공과대학에 자료를 요청하여, 수정자료를 받아 반영하였음을 부연하여 설명하다.
- 정용식 의원이 전자정보공과대학 12% 정원조정은 해당 학과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조건부 승인을 제안하다.
- 기획처장이 지난 학장 및 학과장 전체회의(2022년 8월)에서 해당사항이 전달되었고, 이후 학과별로 논의과정이 진행되었으며 일부 학과의 의견은 피드백되었음을 설명하다. 다시 학과 의견수렴을 거치자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음을 설명하다.
- 정용식 의원이 전자융합공학과는 학과 의견수렴과정이 없었으며, 이에 해당 근거자료의 서류(회의록 등) 확인이 필요함을 요청하다.
- 의장이 해당 학과의 서명된 회의록이 남아야 하고 이에 동의함을 설명하다.
- 기획처장이 학과의견을 공식적인 절차로 요청하는 것이 맞으나 8월 간담회에서 해당 내용이 학장 및 학과장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대한 학과의 논의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음을 설명하다. 간담회 자료는 전부 배포하였고, 이에 대한 학과 내부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음을 설명하다. 이후 일부 학과에서는 내용이 피드백 되었고, 이에 모집단위 전공명 등의 일부 수정이 있었고,

전자정보공과대학 학과장 회의에 이러한 수정 내용이 상정되어 논의되었음을 설명하다. 전자정보공과대학 해당 확정사항은 학장이 대표로 의견을 받아 학사구조개편위원회와 학생정원조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견 개진하는 것이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음을 부연 설명하다.

- 정용식 의원이 전자정보공과대학 발전위원회에서 학장이 '방안', '하나의 (안)'임으로 설명하였고, 이 용어의 의미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향후 동의과정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였음을 설명하다. 사용한 용어가 달라 학과에서 대응을 하지 않았음을 설명하다.
- 강성률 의원이 전자정보공과대학은 전부 학과로 되어있으나, 반도체시스템공학부로 신설하여야 하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전자정보공과대학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사항으로 전공 트랙 개설, 세부전공 추가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되었음을 설명하다. 또한 학부 아래 단일전공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내에서도 사례가 있음을 설명하다.
- 의장이 다른 질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기획처장에게 다시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전자정보공과대학 제10차 학과장 회의록(2022.9.7.)과 제12차 학과장 회의록(2022.10.5.) 관련 사항을 전자정보공과대학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증빙자료로 파일로 제시하며 추가적으로 설명하다. 행정적으로는 단과대학 통하여 학과로 의견이 전달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과대학 통하여 전달하였음을 설명하다.
- 정용식 의원이 학장이 학과장 회의를 통하여 '논의'한 것이며, 학과로 가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임으로 '논의'한 사항임을 의견 개진하다.
- 기획처장이 회의록에서는 '논의 및 의결사항'으로 서명되어있고, 학과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학사구조개편위원회라든지 정원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단과대학장이 의견수렴결과를 개진하였음을 설명하다.
- 김민수 의원이 일반 회사에서도 의결과정은 동일하므로 해당 회의록을 보면 서명이 참석자 명단의 서명인지, 회의 내용에 대한 동의 서명인지 어려움을 지적하다. 회의 참석자 서명으로 볼 소지가 있으므로, 이후 이러한 회의록 서명란은 학교 행정상 수정 보완이 필요함을 설명하다.
- 기획처장이 회의록 서명란은 논의 및 의결사항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답하다.
- 김민수 의원이 그런 취지의 회의록 서명이라면 내부적인 학과의 일부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사항은 번복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권인철 의원이 기획관리위원회에서도 이 안건 논의 시에 학과 동의절차에 대한 문제보다는 신설학과 허가받는 절차의 시급성과 이에 대한 심의기구의 심의 여부 확인 등을 거쳤음을 설명하다. 이로 인해 정원이 조정되는 해당 학과의

논의와 학과회의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규정상 정해진 것이 아니며, 동의절차는 거쳐야 한다는 것이 정서상 맞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향후 보완이 필요하더라도 현재 진행된 심의 절차상은 문제가 없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음을 의견 개진하다. 특히 경희대, 한성대, 덕성여대, 서울과기대 등 여러 대학이 서둘러 본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임을 볼 때 우리대학도 시급성이 있으며, 조건부의결이라기 보다 원안 그대로 진행하되 의견이 달라서 문제제기 소지가 있는 학과는 신청 및 허가, 신설, 운영 전반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의견 소통하여 추진하여야 함을 설명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 대학평의원회 규정 9조 ④항에 근거하여 출석위원 12명 중 7명 동의, 5명 수정동의로 원안대로 가결

**2)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 정석재 교무처장(이하 '교무처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가) 2022학년도 제2차, 3차 학생정원조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적용
    - 2024학년도 컴퓨터정보공학부, 법학부 세부전공 명칭 변경
    - 동북아대학 재학생 소속 변경에 따른 입학정원 표 삭제
  - 나) 정보과학교육원 기관 명칭 변경에 의한 학칙 개정
    - 기관명 : 미래지식교육원(COITECH)
    - 영문명 : Institute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 주요 내용
  - 학칙 제3조(학과(학부)의 편제와 입학정원) 및 [별표1] 학과(부)별 입학정원 및 수여학위종별표 개정
    - ⇒ 2024학년도 세부전공 명칭 변경 반영, 동북아대학 삭제 반영
  - 제95조(구성) 기관장 명칭 및 제98조(부속교육기관) 기관 명칭 변경
    - ⇒ 정보과학교육원장 → 미래지식교육원(COITECH) 원장
    - ⇒ 정보과학교육원 → 미래지식교육원(COITECH)
  - 의장이 학과 세부 전공 명칭 변경과 정보과학교육원 명칭 변경이 해당 학과 및 기관의 요청인지 질의하다.
  - 교무처장이 해당 학과 요청이며, 관련 회의록 내용이 첨부되어 있음을 답하다.
  - 유경선 의원이 동북아대학 재학생 이수학기 중에 '28학기'로 제시된 내용이 맞는지와 졸업에 해당하는 재학기간을 질의하다.
  - 교무처장이 해당 학생은 졸업 유예 중인 학생임을 설명하고, 학부생은 재학연한을 두지 않음을 답하다.
  - 강성을 의원이 해당 학생이 지도학생임을 설명하고, 소속 변경 시에 학생 동의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 연락 두절 등으로 확인이 곤란했음을 부연 설명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 대학평의원회 규정 9조 ④항에 근거하여 전원동의로 원안대로 가결

**3)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 박세규 교학부장(이하 '교학부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부동산 시장의 변화 및 수요 확대로 일반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석사과정을 신설하고, 석·박통합과정 수여학위를 '부동산법무학박사'를 '부동산학박사'로 변경하고자 함
  - 본교 학부 운영과 동일하게 성적평가 자료 제출방법 및 보관방법, 성적산출 근거자료 보존기간 변경
- 주요 내용
  - 제5조(설치학과 및 학생정원) 및 제44조(학위종별), [별표1] 일반대학원 설치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
  - 제23조2(성적평가 자료 보존)
- 강성을 의원이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건설법무학과, 부동산법무학과가 유사한 학과가 아닌지 차이점을 질의하다.
- 교학부장이 겹치는 점은 일부 있으나, 현재 부동산법무학과가 석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에 대한 수요가 있어 추진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 의장이 건설법무학과와 부동산법무학과 참여교원이 동일한지 질의하고, 동일하면 서로 다른 학과로의 존재 이유를 질의하다.
- 김태훈과장이 건설법무학과는 2009년 신설되어 건설업 종사자가 학위를 취득하고 있고, 부동산법무학과는 2019년 신설되어 부동산 관련 종사자의 수요가 있음을 설명하다. 두 학과는 시장의 수요가 다르고, 시기도 10년간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학과로 운영되고 있음을 부연 설명하다.
- 의장이 건설법무학과 재학생 현황을 확인 요청하다.
- 김태훈과장이 2022학년도 2학기 기준으로 19명 재학 중임을 답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 대학평의원회 규정 9조 ④항에 근거하여 전원동의로 원안대로 가결

**【자문 : 규정 개정(안)】**

**4) 교원인사 규정 개정(안)**

- 교무처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전임교원 직급명칭 중 정년보장 교수에 관한 직급을 '정교수'와 '교수'로 병기하고 있어, 이를 관련법률 및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상 구분인 '교수'로

### 통일하고자 함

- 기 폐지된 조직(광운한림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 전임교원 심사 시 논문 인정범위 조정을 통한 대학 연구 실적의 질적 향상 도모
- 주요 내용
  - 정교수(정년보장 교수) → 교수
  - 승진 및 재임용 기준 내 '광운한림원' 삭제
  - 승진 및 재임용 기준 내 'KCI급 이상' 논문 정의 변경
- 의원 전원이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동의하다.

### 5) 교수업적평가 규정 개정(안)

- 교무처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기 폐지된 조직(광운한림원)에 관한 사항 삭제
  - 논문 인정비율 중 공동저자 1인 비율 삭제
  - 연구분야 기준 SCI급 항목별 인정조건 변경
  - SCI급 논문 인정조건을 논문 게재시점(Published Date) 기준으로 변경
  - 논문 모음집, 교재를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전문학술서적으로 인정 가능하도록 변경
- 주요 내용
  - 제5조(평가항목) 및 [별표1] 평가분야별 항목과 배점 '연구 분야 기준'
  - 제7조(평가기구) '광운한림원' 삭제
- 의장이 교재 인정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고, 교무처장이 전문학술서적은 맞지만 교재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점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황임을 설명하다. 또한 교재를 단과대학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사 시, 기존 단서조항이 상황에 따라 적용 조건이 모호하여 적용기준을 통일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함을 답하다.
- 의장이 해당 기준은 '전문학술서적'인 것으로 교재 여부 판단이 불필요하는 의견을 개진하다.
- 의원 전원이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동의하다.

### 6) 연구년 규정 개정(안)

- 교무처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전임교원 직급명칭 중 정년보장 교수에 관한 직급을 '정교수'와 '교수'로 병기하고 있어, 이를 관련법률 및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상 구분인 '교수'로 통일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제11조(의무) '정교수(정년보장 교수)' → '교수'로 변경
- 의원 전원이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동의하다.

## **7) 특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교무처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2023학년도 전반기부터 임용되는 특별전임교원에 대한 복무기준을 신설하여 특별전임교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특별전임 선발하며, 기존 특별전임교원을 포함하는 전면 적용이 아닌 각 학(부)과와 (특수)대학원에서 특별전임교원 충원 목적에 맞게 트랙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여 운영의 탄력성 확보
  - 특별전임교원 중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트랙제 변경(교육↔연구) 기회를 부여, 이를 통해 대학 교육 및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조직의 장에 관한 문구를 "대학(원)장 또는 기관장"으로 통일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제5조(임용계약) 소속(또는 해당) 기관장 → 대학(원)장 또는 기관장
  - 제11조(복무)의 특별전임교원 교육트랙과 연구트랙을 (A), (B) 두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기존 특별전임교원은 (A)유형을 현행대로 적용하고자 함. 2023학년도 전반기 특별전임교원부터는 (A), (B) 유형을 선택 가능하도록 함.
  - 제12조(트랙전환) 신설
  - 제13조(병가) 및 제14조(업적평가), 제15조(준용) 조 번호 변경
- 천성오 의원이 제3차 대학평의원회 안건 자진 철회 후 재상정하기로 한 안건 이므로 해당 사항이었던 교수평의회 협의과정 등을 거쳐 논의되었던 사항을 보완하였는지 여부를 질의하다.
- 교무처장이 이와 관련하여 교수평의회 의장 임기 종료로 인하여 차기 교수평의회 구성 이후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되어 현재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교수평의회에서 특별전임 교원 대상으로 해당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트랙전환에 대한 사항의 요청이 포함되었음을 설명하다. 현재 교수평의회 의장과 충분히 이와 관련하여 논의하였음을 추가 설명하다.
- 강성을 의원이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가급적 일반 학과가 아닌 특수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교원을 임용하는 것으로 학교측과 논의하였음을 설명하다.
- 의장이 연구트랙 교원(B유형) 조건에서 해당사항을 이공계열로 한정한 이유를 질의하다.
- 교무처장이 연구트랙 교원(B유형)의 년 평균 600점 이상의 점수는 매우 높은 기준을 의미하며, 트랙 유형의 다양화를 요청하는 수요가 해당 이공계열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임을 설명하다.

- 의장이 향후 인문사회계열에서도 연구트랙 교원(B유형)을 적용할 수도 있으므로 규정을 일부 계열에 한정하기 보다는 계열 구분 없이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자문하다.

#### **8) 전자정보공과대학 공학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안)**

- 이대석 교수(전자재료공학과 PD교수)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전자정보공과대학 전자재료공학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의 졸업요건 간소화를 위해 졸업요건 지정교과목 삭제
- 주요 내용
  - 제3조(공학프로그램 이수요건) 개정
  - [별표 2] 학과별 공학프로그램 전공 졸업요건 지정교과목 변경
    - ⇒ 졸업요건 간소화를 위해 전공졸업요건 지정교과목 '전자기학2' 삭제
- 유경선 의원이 해당 교과목을 필수 지정한 이유와 필수 해제하는 이유를 질의하다.
- 이대석 교수가 이에 관하여 '전자기학1'이 전공필수로 지정되어있으나, '전자기학2'는 전공선택으로 학생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이수비율을 높이기 위해 필수요건으로 지정하였으며, 현재는 학생들이 대부분 수강하고 있어서 졸업요건을 해제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 의원 전원이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동의하다.

#### **9) 대학원 협동과정의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안)**

- 교학부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학과간 협동과정 평가방법을 변경하여 재학생 수에 따른 개설강좌 수 관리 강화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운영실적 기간 단축(2년마다 평가 → 매년 평가)
  - 재학생수 3년 동안 연 평균 10명 이하인 경우 학과 폐지
  - 학과 폐지 심의기구를 대학원운영위원회로 변경
- 유경선 의원이 재학생 수로만 학과 폐지를 평가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교학부장이 학과 폐지 여부 심의과정에서 해당 학과의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을 통하여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과정이 있으므로 단순하게 재학생 3년동안 연평균 수로만 평가하여 폐지하는 것은 아님을 설명하다.
- 의원 전원이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동의하다.

## **10) 직제 규정 개정(안)**

- 성진호 팀장(이하 '평가감사팀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2022학년도 제2차 학생정원조정심의위원회 의결사항 후속조치로 동북아대학 재적생 소속 변경으로 해당 단과대학 기구 삭제하고자 함
  - 정보과학교육원 기관명칭이 '미래지식교육원(COITECH)'으로 변경됨에 따라 직제 규정 반영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제3조(기구) 기구표 및 [별표 1] 개정
  - 제36조(정보과학교육원장), 제36조의2(정보과학교육원의 조직) 기관 및 기관장 명칭 변경
- 의원 전원이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동의하다.

## **11)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 노진서 정보과학교육원장(이하 '원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정보과학교육원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
- 주요 내용
  - 제17조(재무팀) 4호 등록금 수납 업무
    - ⇒ 정보과학교육원 → 미래지식교육원(COITECH) 기관 명칭 변경
- 의원 전원이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동의하다.

## **12)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운영 규정 개정(안)**

- 원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이세원 과장(정보과학교육원 과장)이 개정(안)을 추가 설명하다.
- 제안이유
  - 정보과학교육원은 시대에 맞지 않는 기관 명칭 및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하여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명칭으로 기관명칭 변경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규정명을 개정
  - 전문 중에 '교육원' → '본원'으로 자구 변경
  - 위원회 구성 및 기능 변경
    - ⇒ 제9조(구성) ④항 교·강사임용심사위원회 변경
    - ⇒ 제11조(기능) ①항 및 ②항 운영위원회 기능
- 김민수 의원이 제9조(기능) ④항의 개정(안)에서 '해당 전공주임교수를 포함한다'는 자구는 수정이 필요함을 제시하다. 해당 자구가 '포함해야 한다'를 의미하

- 는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개진하다.
- 또한 김민수 의원이 제11조(기능) ②항에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중요사항'에 대한 정의가 없어 모호하므로 관련사항을 열거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다.
  - 이에 원장은 해당사항은 교무처의 초빙교원 임용절차에 대한 사항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관련사항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하다.
  - 김민수 의원이 교무처의 어떤 절차를 따르는지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천성오 의원이 제9조에 '시간강사'는 현행 '강사'로 사용하는 용어와 구분하기 위하여 '시간강사'로 표기한 것인지 질의하다.
  - 원장이 '강사'는 강사법을 적용해야 하는 우려가 있어 '시간강사'로 표기한 것이며, 정보과학교육원 '시간강사'는 대학교원의 '강사'와 달리 노동법에 따라 사회 교육을 담당하는 신분으로 계약서를 학기마다 작성하고 학기가 종료되면 계약이 종료되는 신분임을 설명하다.
  - 의장이 해당 사항에 대한 규정 개정(안) 수정을 검토하여 진행하여 줄 것을 자문하다.

#### **13)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학생 준칙 개정(안)**

- 이세원 과장(정보과학교육원 과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정보과학교육원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광운대학교 학생 준칙 규정명 변경
- 주요 내용
  -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규정명 변경
  - 제2조(학생증) 2호의 매 학기마다 학생증 필인 받는다는 내용 삭제  
⇒ 대학 학생준칙 삭제된 사항 반영
  - 제8조, 제 9조, 제10조의 자구 수정  
⇒ 교육원 → 본원, 교학과 → 교학팀으로 변경
- 의원 전원이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동의하다.

#### **14) 정보과학교육원 교·강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 원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이세원 과장(정보과학교육원 과장)이 개정(안)을 추가 설명하다.
- 제안이유
  - 정보과학교육원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규정명 및 기관명 개정
  - 2022.06.28.자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의한 정비
- 주요 내용
  -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규정명 및 제1조(목적)에 반영

- 제3조(교·강사의 구분)
  - ⇒ 초빙교수와 시간강사 → 특별임용교원 및 시간강사로 구분
- 제4조(교·강사의 자격) ①항 및 ②항 통합
  -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자격요건에 맞게 전문개정
- 제5조(임용절차), 제6조(임용기간), 제7조(임용계약) 통합 전문개정
  - ⇒ 광운대학교 특별임용교원 규정 개정에 따른 정비
- 강성을 의원이 제5조(임용절차) ①항의 현행 조항을 개정하는 이유를 질의하다.
- 원장이 대학의 교무처 절차에 따르는 것으로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함을 답하다.
- 기획처장이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에는 초빙교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교수, 석좌교수, 특임교수, 객원교수, 겸임교수 등 각각의 특별임용교원 종류에 따라 임용절차와 자격이 다름을 설명하다. 초빙교수는 정보과학교육원 채용 절차와 같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기관 기초심사 후 전임교수 5인 이상의 초빙교수 임용위원회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명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임을 부연하여 설명하다. 정보과학교육원 규정과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이 서로 다르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대학의 해당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임을 설명하다.
- 강성을 의원이 특임교수와 초빙교수의 임용절차가 다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에는 특임교수와 초빙교수 임용절차가 다르며 특임교수는 '해당 대학(원)장 및 부속·부설기관장 등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하는 것으로 초빙교수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권인철 의원이 제4조(교·강사의 자격) 개정안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이 본교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과 맞지 않음을 언급하다. 본교 특별임용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가 원칙이며, '본교 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없는 특수분야로 인정될 경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자격이 제시되어 있음을 설명하다. 임용절차는 본교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에 맞추고 있으나, 자격이 다르므로 이를 맞추어야 함을 설명하다.
- 의장이 이러한 자문사항을 수렴하여 수정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15) 공간관리 규정 개정(안)**

- 최창호 팀장(이하 '기획예산팀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2022학년도 제2차 공간위원회 의결사항 적용
  - 문구 정비 및 각종 기준과 후속조치 등의 마련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 ▪ 주요 내용

- 제2조(용어의 정의), 제6조(공간사용의 기본 원칙)의 공간관리규정 문구 등에 대한 정비
- 제12조(공간사용료)에서 공간사용로 미납 시 후속조치 추가
- [별표1] 공간유형별 기준 면적에서 특임교수 교수실 배정 기준 마련 및 연구 용실험실 추가배설 시 기본면적 기준 안내
- [별표2] 공간반납지침의 모호한 반납 사유 삭제  
    ⇒ 반납사유로 '대학원생 부재' 삭제
- 강성을 의원이 [별표1] 교수연구실 배설기준에 '특임교수 1인실' 배설기준을 추가하는 이유를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특임교수 임용으로 공간배설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적용되는 사항이 없어 이를 제안하게 된 사항이며, 석좌교수급으로 배설할 지, 기타 비전임급으로 배설할지를 공간위원회에서 논의하였고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에 특임교수는 석좌교수와 비슷한 급으로 규정되어 있어 석좌교수급으로 배설하는 것으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 의장이 이와 관련하여 특임교수 관련 규정의 제22조 자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특임교수 임용에 관한 교내 구성원 논란이 많았음을 부연 설명하다.

제22조(자격) 특임교수는 학교가 부여하는 특정 업무에 적합한 능력과 실적이 인정되는 인사로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25조(재원) ① 특임교수의 재원은 출연된 기금 및 그 수익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 발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비로 충당할 수 있다.

- 김민수 의원이 특임교수 임용은 대학의 홍보를 위한 목적이거나, 우수한 학생 및 발전기금 유치를 목적으로 사회적 영향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며, 이러한 교수님은 대외적으로 활동이 많으므로 1인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또한 학교에서 이러한 분들에 대한 예를 갖춰 공간 등이 마련된 후에 임용하여야 함을 부연 설명하다.
- 기획처장이 특정 특임교수에 대한 사항으로 해당 규정(안)을 고려하기보다 특임교수 자격에 맞는 공간배설 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천성오 의원이 특정한 교원을 지칭하여 해당 규정을 개정하기보다는 특별전임교원의 수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가 기존 회수된 공간의 효율적 재배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공간배설이 진행되어야 함을 제시하다.
- 의장이 이러한 자문사항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을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16) 공간위원회 규정 개정(안)**

- 기획예산팀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공간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에 대한 정비
- 주요 내용
  - 공간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
  - 공간위원회 규정 제5조(회의)
  - 공간위원회 규정 제6조(간사)
- 의원 전원이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동의하다.

## **17) 직원인사 규정 개정(안)**

- 오준희 팀장(이하 '총무팀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질병휴직(신체, 정신 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원할 때) 신청 시 최소한의 요건을 명시함으로서 신청자의 혼란을 예방하고 허가 시 이를 참고하여 허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제21조(휴직의 구분) ①항 : 항 분리(②항 신설) 및 4호의 휴직사유 정비
    - ⇒ 상병휴직 : 삭제(질병휴직에 포함)
    - ⇒ 기타휴직 :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제40조에서 정의하는 휴직의 범위 내로 수정
  - 제21조(휴직의 구분) ②항 : 항 신설 및 질병휴직 요건 명확화(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서 등)
- 천성오 의원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병가 관련 규정을 보면, 진단서 발급 병원의 기준이 엄격하지 않음을 언급하다. 이에 대하여 종합병원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 사유를 질의하다.
- 총무팀장이 급증하고 있는 '마음의 병'에 대하여 병가 및 휴직으로 제출한 진단서 내용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의학 전문지식이 부족하므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설명하다. 타 대학 사례를 조사하였고, 병원에는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의원 등이 있으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는 어느 정도 객관적이라는 판단 하에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안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 총무팀장이 이전 대학평의원회에서 '상급종합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해당 규정 개정(안)이 통과된 부분이나, 이사회에서 다른 사항에 대하여 부결되어 규정을 재상정하게 된 현황임을 부연 설명하다. 상급종합병원은 접근성이 어려우므로 이전 대학평의원회에서 논의된 '상급종합병원'을 '종합병원'으로 하향하여 제시함을 설명하다.
- 의원 전원이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동의하다.

### **18) 직원복무 규정 개정(안)**

- 총무팀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직원인사 규정 제21조(휴직의 구분)의 질병휴직의 요건 '종합병원에서 해당 분야 전문의가 진단한 진단서'에 맞추어 병가 조항 정비
- 주요 내용
  - 제26조(병가)
    - ⇒ 7일 이상의 병가 신청의 경우, 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서 제출 요건 등 반영
- 의원 전원이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동의하다.

### **19)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개정(안)**

- 엄두식 팀장(이하 '현장실습지원팀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2022학년도 제1차 「경력개발 및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른 규정 정비
- 주요 내용
  - 제21조(교과목 개설 및 학점인정) 자구 추가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추가
  - 제24조(성적신청) : 성적신청 절차 현행화
  - 제21조(교과목 개설 및 학점인정) 및 제26조(학생 안전 및 보호 조치)
    - ⇒ 실습기간은 '월' 단위와 '일' 단위 병행 사용
    - ⇒ 기업에서는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의제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실습 기간을 개월수 기준으로 사용
    - ⇒ 대학정보공시에서는 실습기간을 휴가 및 공휴일 등을 제외한 실제출석 일수 20일 이상, 40일 이상 기준으로 사용
    - ⇒ 따라서 두 가지 기준을 병행 사용하여 실습기간을 정하고 합리적인 학점 부여가 될 수 있도록 운영
- 의장이 제21조(교과목 개설 및 학점인정)에 괄호에 표시한 사항을 괄호를 풀어 변경하는 것은 조건이 붙는 것이므로 '1개월 이상. 단, 실제 출석일 20일 이상 '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지 질의하다.
- 현장실습지원팀장이 대학정보공시에서 실습기간을 휴가 및 공휴일 등을 제외한 실제 출석일수로 사용하므로 합리적인 학점부여가 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설명하다.
- 권인철 의원이 학점인정 상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질의하였고, 현장실습지원팀장이 학점인정 및 급여산정 상에 문제가 없으며 기존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음을 답하다.

- 의장이 현재 개정(안) 문구로는 이해가 쉽지 않으므로 이를 한 번 더 고려하여 개정(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자문하다.

## 6. 폐 회

의장이 상정된 안건 심의를 마친 후 폐회를 선언하다.

붙 임 : 회의자료 1부. 끝.

2022년 11월 30일

이상의 회의 내용을 확인함.

의 장

정 동 훈

(서명) 

부 의 장

권 인 철

(서명) 

평 의 원

정 용 식

(서명) 

평 의 원

이 강 훈

(서명) 

평 의 원

유 경 선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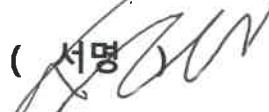
평 의 원

강 성 를

(서명) 

평 의 원

천 성 오

(서명) 

평 의 원

양 근 제

(서명) 

평 의 원

박 민 태

(서명) 

평 의 원

전 시 찬

(서명) 

평 의 원

김 민 수

(서명) 

평 의 원

반 증 혁

(서명) 